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7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7월 28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제정시행과 관련,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 운영됨과 동시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가 새로운 조례의 제정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폐지되었으나
- 제2단계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 운영을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여 민간위탁키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

- ㅇ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(안 제1조)
- ㅇ 시설의 기능을 자연학습과 심신단련, 도민을 위한 교육 등으로 명시하고 운영계획의 수립등을 의무화 함을 명시 (안 제4조 내지 제5조)
- ㅇ 연수대상 및 절차를 정함 (안 제6조)
- ㅇ 연수생에게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를, 자체교육을 위한 시설 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토록 함 (안 제10조)
- ㅇ 관리·운영의 위탁규정을 명시함
  -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 제1항)
  -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 제3항)
  - 관리·운영의 위탁시 운영 및 시설 개·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 제4항)
  - 수탁관리자는 매회계년도 20일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(안 제15조)

○ 도지사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을 명시 (안 제17조)

5. 검토 의견

○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연학습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